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4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이일하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6년 4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Preven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일상적 실천을 통한 아동권리의 보호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실태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일상의 실천을 통한 예방으로

- 아동에게 나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아동이 평상시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아동이 성폭력을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일상에서 안전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이 늘 보호자의 지도와 보살핌 속에 있도록 해야 한다.
- 일회성 교육이 아닌, 가정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 부모 및 다양한 보호자, 교사 및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역할을 증진시켜야 한다.

아동권리 보장의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제34조(성착취로부터 보호), 제35조(아동유괴와 매매로부터 보호), 제36조(기타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합치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이 이용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는 성폭력을 규정하고 처벌조항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3에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규정과 피해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를 포함해 주로 성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내용 및 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규정 제5조(성폭력예방교육)와 동법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다.

Situation | 아동 성폭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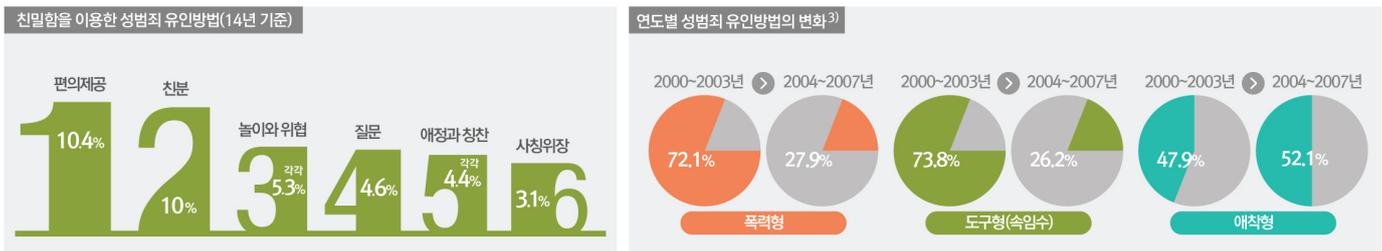
증가하는 아동대상 성범죄, 그리고 심각한 성범죄에 더욱 취약한 어린 아동들

우리나라 아동대상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를 포함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의 경우 아동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성폭력 중 강간비율이 성인은 19.8%인데 비해 14세 이상은 43.9%로 아동의 피해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8~13세 아동은 31.1%, 7세 이하는 20.8%로 13세 미만 아동의 피해비중이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연령 아동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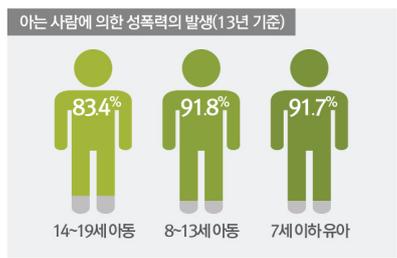
친밀함을 가장한 애착형 성범죄의 증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는 아동을 성범죄로 유인하기 위해 편의제공(10.4%)의 수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친분(10%), 놀이(5.3%), 애정과 칭찬(4.4%)과 같이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애착 형성을 통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속임수 등을 통해 성범죄로 유인하는 경우는 2004년 이후로 그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친밀함을 이용한 유인방법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폭력이나 속임수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애착을 이용한 성범죄는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연령일수록 친밀함으로 아동을 길들이는 애착형 성범죄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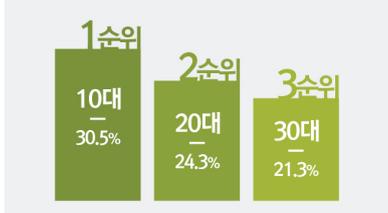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익숙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발생

아동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아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2014)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 유치원, 학원 등지에서 성폭력에 노출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8~13세의 아동의 총 122명 중 112명(91.8%), 7세 이하 유아 총 48명 중 10명(91.7%)이 친인척을 포함하여 동네 사람, 학교, 유치원 및 학원, 주변의 지인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친족 간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7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 연령의 아동에 대한 비율(45.3%)이 가장 높은 것⁴⁾으로 나타나 오히려 아동을 보호할 책임있는 성인에 의해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연령에 따른 강간범죄 가해자 비율(14년 기준)⁵⁾



낮아지는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에 따르면, 미성년 가해자는 2012년 8.1%에서 2013년 12.5%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2014년 강간의 경우 10대 가해자가 가장 높은 비중(30.5%)을 차지하였다. 30대부터 60대 이상의 강간 범죄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의 가해자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연령대비 성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강간비율. 성인 990명 중 196명, 14세 이상 아동 223명 중 98명, 8~13세 아동 122명 중 38명, 7세 이하 유아 48명 중 10명
 2), 4)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윤격경 외(2015)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외(2009)
 5) 10대부터 70대 이상 전체 강간범죄 가해자 수 총 856명에 대한 비율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 성인의 경우와 차별화 되어야 할 아동성폭력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겪게 되는 충격과 후유증이 성인에 비해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성폭력 경험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불안, 분노, 공격성, 우울, 자기 파괴적 행동, 낮은 자존감, 타인에 대한 불신, 약물남용, 재폭력의 피해, 성적(性的) 부적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각종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Paolucci et al, 2001; Putnam, 2003; 김재엽·최지현, 2009), 성폭력을 당한 나이, 지속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 피해아동은 다른 범죄 피해보다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손경숙, 2008). 또한 친밀함이나 애착을 이용한 성범죄에 13세 미만 아동이 더욱 취약한 실태 등을 참고해 볼 때, 성폭력 가해자들이 아직 인지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아동의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아동성폭력은 성인의 경우와 차별된다. 이러한 아동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모든 노력과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성(性)을 이용하여 아동을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일로부터 보호(제 34조)

관련조항: 제 19조(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제 36조(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주인의식 갖기, 그리고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대한 존중의 의무

아동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과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부당하게 다루어졌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도 존중해 주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람 간에는 각자마다의 '경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계란 개인이 존중받아야 할 신체적·정서적·물리적·언어적 영역을 말한다(이현혜, 2012, 2015).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낮은 성인이 일방적으로 힘을 이용해 아동에게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래끼리 서로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의 몸과 마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아동성폭력예방의 제1차 책임은 보호자와 지역사회

아동은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성폭력 예방의 우선책임은 성인 보호자와 지역사회에 있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항상 모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아동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표창원, 2012). 따라서 보호자와 지역사회는 아동안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이 성폭력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부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어른들의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동발달에 맞추어 지도할 의무와 책임(제 5조)

관련조항: 제 18조(부모의 책임)



Recommendations |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 아동에게 나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아동이 자신과 상대방 간의 경계를 알고 그것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일상에서 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게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미성년 가해자들의 특징은 성폭력을 놀이의 하나로 생각하고 또래끼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윤덕경 외, 2015). 그러므로 평상시 가정에서부터 경계 존중교육을 통해 아동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동시에 있음을 가르쳐, 상대방을 배려하는 또래문화와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평상시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계를 넘는 불편한 접촉이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친밀함을 이용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고통시키는 형태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동은 친밀함과 애착을 이용한 성폭력을 인지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해자가 평상시 아동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면 아동은 성폭력과 친밀감을 더욱 구분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상황 이전 평상시부터 아동에게 “싫어요(NO)”가 수용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현혜, 2012). 그러나 신체적 접촉을 단순히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여 아동이 모든 접촉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은 소중한 여겨져야 할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 분명하며, 아동이 경계존중의 원리와 방법을 잘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유익하고 평등과 상호존중적인 접촉까지 거부함이 들지 않도록 잘 알려 주어야 한다.

● 성폭력을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일상에서 안전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해야 한다.

성폭력이 불행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특정한’ 문제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아동성폭력은 언론을 통해 한시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특정사건으로 한정되어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센’, ‘낮선’, ‘무서운 어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병균들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듯, 성폭력도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안전문제’로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익숙한 곳에서, 나이, 몸집, 힘의 세기나 성별에 상관없이 아동 주변의 어떤 사람이라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친분과 칭찬, 선물을 주는 등 친밀감을 위장한 접근에 매우 취약하므로 아동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위험상황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되도록 아동이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위험하거나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안전을 위한 원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위급시도 대비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자리를 피해 보호자 및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 주어야 한다.



굿네이버스 아동성폭력·유괴예방교육
똑똑(TOC TOC)한 안전교육 영상내용 중 발췌

경계존중 교육의 원칙⁶⁾

1.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 “싫어요(NO)”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해야 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이 “싫어요(NO)”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6) 이현혜(2012, 2015)

- **아동이 늘 보호자의 지도와 보살핌 속에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상시 보호자는 늘 아동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아동을 보호의 울타리(Chain of protection) 안에 두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부모가 아동이 어떤 길로 다니고 어디에서 누구와 어울리는지 파악한다면 그 안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고(표창원, 2013), 아동이 평소 자주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기르면 실제 위험상황이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신주한, 2013). 따라서 아동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보호자와 소통하고 허락을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Pediatrics)와 같은 국내외 다수 아동성폭력 및 예방분야 전문가들 또한 보호자의 관심과 감독을 대체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은 없다고 보는 만큼, 보호자는 아동과 평소 충분히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관심으로 보살펴야 한다.

- **일회성 교육이 아닌, 가정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단기성이 아닌 가정에서 아동 보호자들의 정기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특히, 친밀함이나 애착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길들이기 과정과 같은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교육해야 한다. 보호자는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배운 예방교육 내용을 집에서 함께 되새겨 보거나, 아동안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을 같이 읽고, 평상시 아동과 함께 뉴스를 시청하며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다. 단기적 교육을 통해서도 아동이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동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위험상황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식과 기술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들은 평상시 애정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부모 및 다양한 보호자, 교사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옹호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의 책임은 보호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 및 지역사회가 아동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및 교육,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 및 교육기관, 아동보호 및 양육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을 보다 폭 넓게 하여 아동관련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차적인 보호의 책임이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4년 아동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비율은 높았지만(95% 이상), 학부모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30%이상~55%이하), 실제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예방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주로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만 아동에게 교육을 하거나 어떻게 교육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유미, 2013).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 및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체계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Casestory | 굿네이버스 아동성폭력예방교육 :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실시

굿네이버스는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와 같이 아동권리교육의 보급을 위해 힘써왔으며, 그 일환으로 아동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 전부터 학령기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주 양육자와 보호자인 부모, 교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아

훈련된 교육강사가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실시



유아 성폭력예방 인형극

유아에게 친숙한 언어·인형의 움직임을 통해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함



CES 아동힘키우기 서비스

동화 구연과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아동의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교육을 기반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

교육참여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반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우리 몸을 지키는 소중한 약속(워크북)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성폭력 및 유괴 유인 패턴과 상황별 대처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워크북이 가정에 배포됨

초등

훈련된 교육강사가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실시



초등 성폭력예방 인형극

학령초기 아동에게 인형극을 매개로 다양한 성폭력 위험상황을 제시하고 상황극 등을 통해 대처방법을 습득하게 함



PAPCM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기반으로 권리침해(성폭력 및 유괴) 시 대처하는 법을 모둠별 과제 수행과 퀴즈참여 등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

교육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내 몸을 지키는 소중한 약속(어플리케이션)

성폭력·유괴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상황별 안전수칙 등을 어플리케이션의 미션 게임과 웹툰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함

담임교사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보재 제공



폭죽(TOC, TOC)한 안전교육

학급 담임교사의 주도로 애니메이션 시청, 보드 게임 키트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아동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성폭력·유괴예방을 위한 안전원칙을 습득하도록 도움. 또한 사후 캠페인 참여를 통해 또래간 경계를 존중하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훈련된 교육강사가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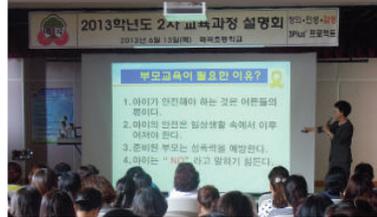


예비부모교육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고와 행동 방법,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도움

부모·교사

아동 및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부모, 교사 교육 실시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



교사교육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이해와 아동학대예방 및 발견,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

참고문헌 |

- 김재엽·최지현(2009). 성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30(2), 231-247.
- 김지선·박지선·최수형(2009).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보건복지가족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휘·강용길·김도우·정진성(2014).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연구(III)-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지역공간 특성분석 및 정책대안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백유미(2013).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부모의 성폭력예방교육 수행역량 요구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269-289.
- 손경숙(2008). 아동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동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대책방안 연구. *인권복지연구* 제4호, 103-130.
- 신주한(2013). 아동범죄 예방교과서 아동안전지킴이 달팽이 형사대. 파주: 고인돌.
- 여성가족부(2015. 12. 30). 어린이집 유치원 성폭력 예방교육 최초 실적 점검 실시 [보도자료].
- 윤덕경·이미정·장미혜·주재선·송효진(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8~2013).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덕경·이미정·장미혜·주재선·송효진(201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4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현혜(2012). 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현혜(2015). 좋아서 꺼안았는데, 왜? 아동 안전을 위한 경계존중교육 그림책. 파주: 천개의바람.
- 표창원(2012. 02. 15). 부모 60분: 아동성폭력특집 1편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 서울: EBS.
- 표창원(2013).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서울: 지식의 숲.
- Paolucci, E.O., Genuis, M.L., & Violate, C. (2001) A Meta-Analysi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Psychology*, Vol.135 Issue 1, 17-20.
- Putnam, F.W. (2003). Ten-Year Research Update Review: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ume 42, Issue 3, 269-278.